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1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5. 2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5. 24.

다. 상정일자: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6.11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세무1과장 김건탁】

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 규정의 일부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 확대(안 제15조)
- 2)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일부 문구 정정(안 제17조제2항)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안은 근거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그에 맞게 고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

확대하여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외에 '주택'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취득세는 '건축물'뿐만 아니라 '주택'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, 재산세 감면대상에 '주택'을 건축 중인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자 안 제15조에 '주택' 중인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. 이러한 개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리고 안 제17조제2항을 보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'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' 하도록 되어있음에 반해 동 조례에는 '감면 여부를 조사·결정'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감면 결정이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의한 '처분' 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